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태근 의원 외 13명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를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개선코자 함.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4.10.31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5년 ~ 2018년도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2조(의정활동비지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3조)
 - 현행 : 2,154,000원 ⇒ 개정 : 2,199,000원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5. 검토의견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회적 정의 실현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14. 10. 31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5년~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2018년도 월정수당을 2017년도 월정수당에 '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것으로서 의정활동비는 조정이 없으며,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행 2,154,000원에서 2,199,00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